

# 교원 창업 관리 지침

(제정 2025.11.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 교원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라 함은 우리대학교에 소속한 전임교원을 말한다.
2.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5. “교원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을 말한다.
6. “창업기업”이라 함은 교원창업자가 이 지침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 제 2 장 창업 및 지원관리

**제3조 (교원창업 승인신청의 자격)**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과 같다.

1.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
2. 3년 미만의 근속 교원이 창업 시 우리대학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제4조 (교원창업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창업보육 센터를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 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겸직허가신청서

####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5조 (교원창업의 심의 및 승인)** ① 교원창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최종 결정하며, 창업 허가(또는 승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대상기술 허여의 적격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
4. 그 밖의 창업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명지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교원창업을 신청하는 경우 (주)명지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서 심의 및 승인할 수 있다.

**제6조 (교원창업대상기술의 요건)** ① 교원창업대상기술은 우리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교원창업자 또는 타인이 우리대학교에서 근무 중에 개발하거나 취득한 기술)로서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및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기술에 한한다.

② 제1항에는 기업과 공동개발한 기술 중 참여기업이 실시권을 포기하였거나 참여 기업에 실시권이 없는 기술을 포함한다.

**제7조 (기술실시계약체결)** ① 제6조의 지침에 따라 최종 승인을 받은 교원창업자가 설립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설립 후 60일 이내에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산학협력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제 3 장 교원창업자의 의무

**제8조 (교원창업자의 겸직)** ① 제6조의 지침에 따라 최종 승인을 받은 교원창업자는 30일 이내에 겸직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겸직허가에 대한 절차 및 조건은 우리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30조를 따른다.

**제9조 (기업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① 교원창업자는 창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내용을 창업보육센터를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원창업자는 창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상업등기소에 법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창업보육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원창업자는 창업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절차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창업보육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원창업자의 창업 고지 의무)** 제2조 제2호의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반드시 제4조 내지 제6조의 절차를 거쳐 창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우리대학교의 기술을 유용한 때에는 해당 기술로 취득한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은 우리대학교의 기술사업화에 사용해야 한다.

**제11조(교원창업자 주식기부)** ① 교원창업자는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기업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기부한도 주식 수”라 한다)을 우리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우리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출연 당시 교원창업자의 보유주식 수(특별관계인 보유주식 수를 합산하며, 이하 동일)를 고려하여 출연한도 주식 수를 낮출 수 있다.

② 교원창업자는 교원 창업기업의 자본금(출자금 포함하며, 이하 동일) 1억원을 한도로 제1항의 기부한도 주식 수에 달할 때까지 주식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창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식기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교원 창업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명지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2. 이 지침에 의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에 제1항의 기부한도 주식 수 이상의 주식기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④ 기부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교원창업자가 소속된 학과에 배분할 수 있다.

**제12조(업무공백 보완)** 교원창업자는 창업활동에 따른 해당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활동 등 업무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3조(학생지도)** 교원창업자는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업

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창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유출금지)** ① 교원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우리대학교로부터 획득한 정보 또는 재직시 취득한 정보를 우리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15조 (시설물 사용)** ① 교원창업자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대학 시설물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산정 및 징수는 우리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우리대학교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제 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④ 교원창업자 및 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우리대학교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교원창업자에게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식재산권)** ① 교원창업자는 창업활동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즉시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원창업자가 신고한 지식재산권은 창업기업과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에 대한 절차 등의 관리는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자료제출 요구)** 우리대학교는 교원창업자에게 다음사항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원창업자는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업경영현황 자료

2. 그 밖에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우리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제18조(중단 및 취소)** ① 창업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최종 결정하여 창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우리대학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기업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제7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창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대상기술의 허여 결정 및 교원의 겸직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교원 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교원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양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합병, 매각, 양도 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산학협력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산학협력단은 지재권의 사용조건, 대가, 기간 등을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여부를 창업기업에 통보해야한다.
3. 우리대학교 소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과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중요사항 변경통보)** ① 교원창업자는 창업기업의 명칭, 업종변경 등 창업기업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본인의 신원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창업보육센터를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원창업자는 창업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업보육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우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소관 「교원 창업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